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취재원의 명시와 익명조건

2015-1241 신문윤리강령 위반

中都日報 발행인 김 원 식

주문

中都日報 2015년 8월 26일자 15면 「보령 머드 범벅된 스페인 ‘Mejor(최고)」」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中都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대한민국 넘버원 축제 ‘보령머드축제’가 세계적인 축제 ‘라 토마티나’(토마토 축제) 참가자들의 마음을 훔쳤다.

스페인 현지 시각 24일 낮 12시(한국시각 24일 오후 7시)부터 진행된 ‘리틀 보령머드축제’에는 지난 달 막을 내린 보령머드축제장의 열기와 관심이 그대로 옮겨졌다.

뷰놀이에서는 26일(스페인 현지시각) 단 하루 개최되는 라 토마티나(토마토 축제) 연계행사로 다양한 체험행사를 개최하며, 리틀 보령머드축제는 라 토마티나 축제 이틀전인 24일에 뷰놀이청 앞 광장에서 개최됐다.

라 토마티나(토마토 축제)의 연계행사로 스페인 뷰놀이에서 개최된 리틀 보령머드축제장에는 ‘보령머드체험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형머드탕(4개)와 소형슬라이드(2개), 놀이형 에어바운스(4개)가 설치됐으며, 토마토 축제를 즐기기 위해 찾아온 세계 각국의 관광객에게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지난해 한번 경험해 본 뷰놀이 시민들은 또 한번 축제 체험을 통해 머드의 열기에 빠졌으며, 올해 첫 경험해본 관광객들은 처음에는 토마토 축제장에 설치

된 체험시설을 보고 의아해 했으나, 유럽인 특유의 호기심과 도전정신으로 곧 체험시설을 통해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신나는 머드체험을 즐기고 'Mejor Festival!'(스페인어로 최고 축제란 뜻)을 연발했다.

이날 스페인 공영방송사와 Hoy bunol 등 지역 방송사에서는 현장의 생생한 체험 장면을 촬영하는 등 '리틀 보령머드축제'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토마토축제 홍보 팸플릿과 현수막에도 보령머드축제에 대해 게재해 보령머드축제가 세계적인 축제임을 증명했다.

시 관계자는 행사장에서 뷰놀이 관계자를 통해 '보령 머드'가 피부 노화방지, 노폐물제거, 미용효과 등이 있다고 안내방송을 통해 축제 참가자들에게 알려 지난해 다소 아쉬웠던 '머드의 효과' 부문을 홍보하기도 했다. 이날 체험장에서 사용된 머드는 보령머드파우더로 머드축제장에서 사용되던 머드와 동일하며, 행사를 위해 지난 8일 스페인 뷰놀시로 보냈었다.

스페인 토마토 축제는 매년 8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개최되며, 스페인 발렌시아지방의 작은 마을 뷰놀에서 1944년부터 시작됐다. 26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되는 토마토축제에 2만 2000명이상이 참가하며, 약 5만의 토마토가 뿌려진다. 2013년부터는 1인당 10유로의 입장료로 유료화 됐으며, '리틀 보령머드축제' 체험행사는 본행사가 열리는 2일전에 지난해와 같은 장소에서 개최됐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中都日報의 위 기사는 스페인에서 토마토 축제 '라 토마티나'의 연계행사로 '리틀 보령머드 축제'가 열렸다고 소개했다. 스페인 현지에서 토마토 축제 이틀 전에 열린 리틀 보령머드 축제는 소형 머드탕과 소형슬라이드, 놀이형 에어바운스를 설치해 세계 각국의 관광객에게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는 것이다.

기사는 『유럽인 특유의 호기심과 도전정신으로 곧 체험시설을 통해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신나는 머드체험을 즐기고 'Mejor Festival!'(스페인어로 최고 축제란 뜻)을 연발했다.』, 『이날 스페인의 공영방송사와 Hoy bunol 등 지역 방

송사에서는 현장의 생생한 체험 장면을 촬영하는 등 ‘리틀 보령머드축제’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라고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하지만 이 기사는 바이라인 출처가 ‘보령’인 점을 볼 때 기자가 스페인 현장에 가지 않고 쓴 기사다. 그렇다면 기자는 이 기사내용을 어떻게 취재했는지, 취재원이 외신 기사인지, 보령시 관계자인지 등을 명확하게 밝혔어야 했다.

이처럼 기자가 뉴스 발생 현장에 가지도 않고 취재 및 보도를 하면서 아무런 취재원을 밝히지 않는 행위는 독자들의 신문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5조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①(취재원의 명시와 익명조건)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